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협약

2005. 2. 5.

건설교통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목 차

제1조	정의 -----	3
제2조	출자자의 지분변경-----	3
제3조	총사업비 및 중민간사업비-----	4
제4조	공시비 -----	4
제5조	이용자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4
제6조	운영비용 -----	5
제7조	최소통행료 -----	5
제8조	통행료의 승격적 조정 -----	6
제9조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	6
제10조	개정지원 -----	7
제11조	천안JC-남천안IC 구간의 확장 -----	8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삽입자 부담 -----	8
제13조	부록의 변경 -----	9
제14조	실시협약의 효력변경 -----	9
제15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 -----	10
※ 부록 : 1.(출자자 및 지분율)~ 11.(재무모델)		

철안 ~ 는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협약

대한민국 정부("정부")와 철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자")는 철안-논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출자자변경 및 자금제조단과 관련하여 2000년 12월 14일 체결한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함)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5년 2월 5일에 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출자자의 지분변경

(1) 출자자 및 ~~지분율을~~ ~~보통1에~~ ~~지~~ ~~지~~ ~~전~~ ~~바~~와 같다.

(2)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출자자의 합병 또는 파산 등의 부동이한 사유로 인한 변경은 제외,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5% 이상 출자한 경우에는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회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록 1에 기재된 출자자 외의 제3자불 출자자로 추기하거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변경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부에게 사전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하되, 대주단 전원의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이 변경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내에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제3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실시협약 제11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총사업비는 부록 2와 같이 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14,028억원으로 하고, 총민간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국고보조금 금 4,082억원을 제외한 금9,946억원으로 한다."

제4조 공사비

실시협약 제17조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공사비는 정부에서 ~~실시협약~~ 실시실개내의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되, 부록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12,750억원으로 한다."

제5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1) 실시협약 제38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도의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본 도로에 대한 전년도의 교통현황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시협약 제38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에게 동항항과 관련된 정산자료 등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용

(1) 실시협약 제39조 (운영비용)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0년 1월 1일 불면가격 기준 금 5,210억원으로 한다."

(2) 실시협약 제39조 (운영비용)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⑤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법인세(법인세한주민세 포함)의 세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동행료율 조정, 부상사용기간의 조정 또는 재정지원 등 동행료율 동시항을 반영한다."

제7조 최초동행료

실시협약 제43조 (최초동행료)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최초동행료는 부록 5에 정한 바와 같이 2000년 1월 1일 불면가격 기준 금 5,811원(1종 기준, 71.78원/km × 80.96km, 무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8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실시협약 제44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을 하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월 20일 또는 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행료를 신고한다."

제9조 통행료수입 보상 및 환수

(1) 실시협약 제2조 (정의) 28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8. 보장기준통행료수입 : 부록 6에 명시되어 있는 각 특정사업연도 추정통행료수입의 82%를 말한다."

(2) 실시협약 제2조 (정의) 72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72. 환수기준통행료수입 : 부록 6에 명시되어 있는 각 특정 사업연도의 추정통행료수입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아래 (3)항에 따라 산정한다."

(3) 실시협약 제46조 (통행료수입 보상 및 환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동안 매 사업연도의 실제 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을 보상하거나,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그 초과분을 환수하기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2%를 초과하고 92% 이하일 경우 그 초과분의 40%

2. 당해 사업연도의 실제동행료수입이 추정동행료수입의 92%를 초과하고 102% 이하일 경우 위 1호에서 산정한 금액 및 92% 초과금액의 60%의 합계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실제동행료수입이 추정동행료수입의 102%를 초과하고 110% 이하일 경우 위 2호에서 산정한 금액 및 102% 초과금액의 80%의 합계액
4. 당해 사업연도의 실제동행료수입이 추정동행료수입의 110%를 초과할 경우 위 3호에서 산정한 금액 및 110% 초과금액의 전부”

(4) 위 (2)항의 초과분 환수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지급하는 환수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 한다.

(5) 실시협약 제46조 (동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동행료 수입보장 및 환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대사업연도 세부 제표가 확정되는 경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 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제38조에서 정한 전년도 이용차량 및 수입 확인이 완료된 동행료수입현황 등에 관한 자료(동행료수입보장이 필요한 경우 그 내역 포함)을 정부에 제출하며, 이때 동행료 수입보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정지원,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자료(내역 포함)를 첨부하여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1) 실시협약 제53조 (재정지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사업시행자가 매년 3월말까지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정부는 재정지원 교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재정지원 소요금액을 확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금액을 당해 연도의 7월 말까지 지급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연도 2월말까지 지급한다.”

(2) 실시협약 제53조 (재정지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재정지원에 있어 재정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체되는 경우 정부는 지원 요청일이 속한 연도의 차기년도 3월 1일부터 한국증권전산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불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천안JC-남천안JC 구간의 확장

사업계획서 및 변경사업계획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및 2004년도 실적교통량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는 2015년 및 2016년도에 계획된 천안JC-남천안JC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확장비용을 해당년도의 운영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단, 이 변경 실시협약 체결 후 위 구간이 통행차량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위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구간을 확장하기로 하되 그 확장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보전방식과 절차는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12조 사업시행자의 납입자본금

사업시행자는 납입자본금의 67.5%를 한도로 자본금을 후순위차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3조 부록의 변경

(1) 실시협약의 부록 1부터 부록 11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부록 1부터 부록 11로 변경되며, 실시협약상 해당 부록에 대한 언급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의해 변경된 부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2) 실시협약 제39조 (운영비용) 제2항에 기재된 "부록7"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부록 7-1로 변경된다.

(3) 실시협약 제61조 (매수장구권) 제2항 및 실시협약 제62조 (해지시 지급금)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부록8"은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이 변경실시협약의 부록8-1으로 변경된다.

1. 법인세율은 30.1%에서 27.5%로 한다.

2. 물가상승율은 5%에서 4%로 한다.

3. 제11조에 명시된 천안JC-남천안JC 구간의 도로 확장비용은 2015년 및 2016년의 운영비용에서 제외한다.

(4) 실시협약 제39조(운영비용) 제5항의 법인세율의 변경에 따른 조정은 위 재무모델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제14조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실시협약의 규정 중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

이 변경실시협약은 부록 1과 같이 출자자 및 지분율이 변경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기재 일차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2월 5일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장관

강봉진



대한건설산업진흥공단
한양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수호

